신구조문대비표 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

항공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267호, 2018. 10. 30., 일부개정]	항공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462호, 2018. 12. 31., 일부개정]
제9조(실무위원회)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책위 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 .	제9조(실무위원회) ①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 1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. 위원의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)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<u><신 설></u>	⑨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<신 설>	⑩ 위원은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.
제3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 게 위임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서울지 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.	제3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1. ~ 3. (생 략)	 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	4.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.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 제 신청현황 및 그 처리결과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다.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 고의 접수
5. ~ 32. (생 략)	5. ~ 32. (현행과 같음)
33. 법 제7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(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	33.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제출하는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의 접수(항공사업의 등록 업무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)

34.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지방항공청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84 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만 해당한다) <u><신 설></u>

②·③ (생 략)

34. 법 제7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(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

35.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지방항공청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84 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만 해당한다) ②·③ (현행과 같음)